1999. 1. 1公布된 改正不正競爭防止法의 解說(완)

목 차

Ⅰ. 不正競爭防止法의 改正 背景
Ⅱ. 改正 不正競爭防止法의 主要 內容 解說
1. 法律의 名稱改正
2. 世界貿易機構加入國 적용추가
3. 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및 過怠料 根據 新設
4. 민사적 구제수단의 보완
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관계
6. 外國人에 대한 適用例外조항 삭제
7. 外國關聯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加重處罰
8. 刑事處罰 대상(保護客體 主體)의 擴大
9. 訴追要件의 緩和(친고죄를 일부 非親告罪로)
Ⅲ. 이번 法 改正時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
Ⅳ. 맺음말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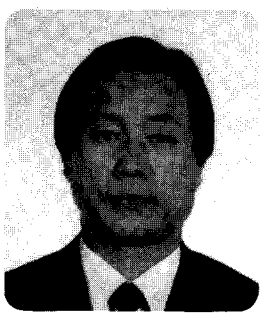

최 선 배
〈특허청 조사과장〉

Ⅲ. 이번 법 개정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

금번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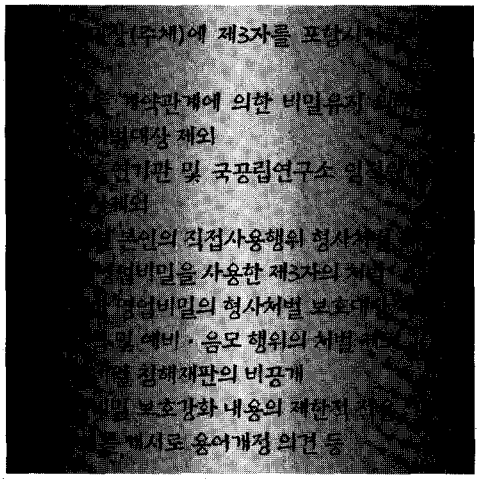

1. 처벌대상(주체)에 第3者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

□ 處罰主體

○ 前·現職 임직원만 처벌(案 第18條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전·현직 임직원과 같은 신분범의 누설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취득한 제3자까지도 입법기술상 가능하지만 부정취득한 제3자는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는 영업비밀의 성격상 기업자체의 비밀유지노력에 의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므로 외부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어렵고,

- 문서, 도면 등의 절취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의 대부분은 형법상의 죄목인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도 대부분 처벌이 가능하고,

○ 또한, 형사처벌의 선호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형식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선 부정취득한 제3자를 제외시켜 이 법을 운영하고, 제3자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빈발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키로 법무부, 안기부등 관련부처간 협의하였다.

2. 위임등 契約關係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자의 형사처벌대상 제외

□ 규정내용

○ 기업의 前·現職 임직원만 처벌(案 第18條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영업비밀의 침해자가 영업비밀보유자와 위임, 도급, 라이선스계약 등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공서양속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바,

○ 이와 같은 사경제주체 상호간의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같은 지나친 공권력의 작용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인을 형사범으로 양산시킬 우려가 있고,

○ 따라서, 위임 등 계약관계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현재와 같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등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하도록 하였다.

3. 政府出捐硏究機關 및 國公立硏究所 임직원의 처벌대상 제외

□ 규정내용

○ 기업의 前·現職 임직원만 처벌(案 第18條 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이 법의 목적이 국가기밀보호가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에 있고,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별도로 비밀준수의무와 그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당해기관이 영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기업의 범주에 속할 것이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7(비밀준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회계검사하는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벌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임직원 본인의 直接使用행위 형사 처벌 제외

□ 규정내용

○ 전·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案 第18條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특정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퇴직후 창업 또는 재취업할 경우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새로운 직종의 기능을 익히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선호와 적성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고,
-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갖는 경제구조에서는 타 분야의 직업을 갖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통하여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음이다.

○ 따라서, 퇴직한 임직원의 직접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문직 종사자의 퇴직, 전직을 속박하는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현재와 같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하도록 하고,

○ 다만, 외국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을 강하게 내포한다는 측면과 국익보호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였다.

5. 침해영업비밀을 使用한 第3者의 형사처벌 제외

□ 규정내용

○ 기업의 前·現職 임직원만 처벌(案 第18條 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 것은 그들의 누설행위가 기업과

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높다는데 있음에 반하여,

- ○ 영업비밀 침해를 교사하거나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하여 침해영업비밀을 입수·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며,
- ○ 단순히 침해영업비밀을 입수·사용한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적 수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

6. 經營上 營業秘密의 형사처벌 보호 대상 제외

□ 규정내용

- ○ 그 기업에 有用한 技術上의 영업비밀(案 第18條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 기술상의 영업비밀은 기업이 많은 시간과 연구개발비등을 투자하여 개발·축적한 것으로서,
  - 이에 대한 보다 강한 보호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경영상의 영업비밀에 비하여 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 ○ 한편, 고객의 명부, 판매 매뉴얼, 선전광고기법, 제품의 할인시스템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형사처벌 대상의 영업비밀에 포함하게되면
  -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한 보호받도록 하였다.

※ **경영상 정보** : 고객의 명부, 거래선의 루트,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사원연구지침서, 고객관리기법, 판매 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자금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예산배분계획, 직제개정계획 및 조직관리기법, 영업전략정보, 사업계획자료, 사업성 검토자료, 선전광고기법등

7. 未遂犯 및 豫備·陰謀행위의 처벌 제외

□ 규정내용

- ○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案 第18條第2項)

□ 포함하지 않은 理由

- ○ 형법은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28)하고,
  -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죄·간첩죄·이적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그 처벌은 각 본조에서 정한다"거 규정(§29)하여,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강도 강간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고,
- ○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의 체계는 영업비밀을 일종의 무체재산권의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수단에 의한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이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일종의 부정경쟁행위로 파악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부정경쟁행위는 영업자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이며, 그 행위의 결과 경업자의 이익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규제하고자하는 것이므로,

○ 현행법상의 영업비밀보호의 기본성격에 비추어볼 때,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침해행위의 결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및 경업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이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서 처벌이 요구된다.

○ 따라서, 범죄의 실행이 완료에 이르지 아니한 미수와 예비·음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8. 영업비밀 侵害裁判의 非公開

□ 규정내용

○ 현행 및 개정안 : 규정하지 않음.

□ 규정하지 않은 理由

○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재판의 비공개여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헌법 제109조(재판공개의 원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 **헌법§109(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와같은 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비밀보호라는 명분으로 재판절차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입법의 소지가 있으며,

○ 또한, 우리나라의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소송기록 열람기록 제한)규정과 배심원 제도가 없고 법원에서의 심리는 실체적인 내용도 거의 서면심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 영업비밀이 제도적으로 누설될 위험성이 미국, 일본등 타국에 비하여 적음.

* **민사소송법§151(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또는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따라서, 입법적 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사법부의 실무의 발달에 맡기도록 하였다.

9. 영업비밀보호 강화내용의 制限的 適用

□ 규정내용

○ 첨단기술분야와 재래기술분야의 영업비밀 구분없이 적용

□ 개정하지 않은 理由

○ 일부 첨단기술 보유업체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타국과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만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고시토록 하여 고시된 기술분야에 대해서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 공업발전법에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첨단산업과 재래산업의 범위획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 현재 공업발전법에 의해 고시된 내용도 구분이 모호한 실정

○ 첨단기술 분야와 재래기술 분야의 구분곤란

-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각 기술별로 Life-Cycle이 다르며, 재래기술 분야에서도 타국에 비해 우위를 확보한 기술이 있어, 이에 관한 분류기준을 새로이 정하여 기술분야별로 세분화하기는 곤란

○ 영업비밀의 특성상 이미 고시된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고시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영업비밀누출 제기우려가 있고

- 만약 고시한다고 하여도 기술의 Life-Cycle이 단축추세에 있어 고시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말미암아 보호시기 상실로 실효성 미흡

○ 대외 차별적 조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한적 적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Ⅳ. 맺음말

정부는 작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의「반도체 첨단기술 해외유출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발표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점을 보완,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동법의 개정을 산업자원부에서 추진 대통령 주요업무 보고시 영업비밀보호법 제정계획을 보고 한 후 산업자원부 주관 관련 부처 및 업계회의개최결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입법이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현행부정경쟁방지법을 보완하되 특허청에서 이를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특허청으로 이관하여 이법의 개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청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이 법의 개정을 이관 받은후 경제단체 및 관련업계 300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나, 이 법의 성안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을 대폭적이고 강화된 처벌형량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형량이 너무 높으므로 이를 대폭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술유입 및 고급 두뇌의 외부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국내·외 관련 법·기술 및 인력 유통과 벤처기업 창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의 조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의 거부·기피·방해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특허청은 검·경과 함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위조상품의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그 수법도 점점 지능화 하고 있어 우리청에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보호강화와 외국과의 통상마찰해소를 위하여 사법경찰권의 확확보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중 이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知識財産權의 보호강화를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한과 사법경찰권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할 계획이다. 발특9902